

석재산업진흥지구 [] 지정 [] 변경 신청서(지방자치단체용)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		90일

신청인	지방자치단체	담당부서
	담당자	전화번호
	주소	

석재산업 진흥지구	면적 m ² (ha)	위치
	지정 또는 변경 신청목적	

변경신청 내용

변경 전	변경 후

「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석재산업진흥지구 []지정 []변경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산림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기관이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1부 2.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 1부 3.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서류 각 1부 4. 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목적, 위치 및 면적이 표시된 서류(토석채취제한지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5.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협의 절차를 이행한 서류(협의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6. 그 밖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	수수료 없 음
------	--	------------

처리절차

신청서	→	접수	→	관계기관 협의	→	검토·심의	→	결과통보
-----	---	----	---	---------	---	-------	---	------

신청인

처리기관: 산림청